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(안)

의 안 번 호	2016-

제출연월일 : 2016. 10 . .
제 출 자 : 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2017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·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출연개요

○ 근거법령 :「지방세기본법」제 146조,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14조

○ 대 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(대표 허동훈)

○ 사 업 비 : 3,200천원(출연 예정금액)

-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(단위:천원)

사업기간	2016년 예산액	2017년 요구액*	재원별				
			계	국 비	도 비	군 비	기 타
2017년	3,085	3,200	3,200			3,200	

○ 사업내용 : 지방자주재원의 확충,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,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과제 선정, 연구 수행

3. 부서의견

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네트워크포럼 운영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

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

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,

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

4. 참고사항

○ 출연 기관현황 : 붙임 1

○ 관계 법령 : 붙임 2

○ 기타 참고자료(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) : 붙임 3

[붙임 1]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한국지방세연구원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설립근거</td><td colspan="3">법 률 : 지방세기본법145조
시행령 :
조 례 :</td><td>전화번호 : 02-2071-2723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</td><td>홈페이지 :
www.kilf.re.kr</td></tr>
<tr><td>주요연혁</td><td colspan="2">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,</td><td>기관형태
(출자, 출연)</td><td>- 출연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인원현황
('16.05.10.
현원기준)</td><td>계</td><td colspan="2">정규직</td><td>비정규직</td></tr>
<tr><td>45명
(정규직과 비정규직
합계 인원수)</td><td colspan="2">27명 (6명)
*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(지자체임원 등)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( )로 표시) ※ 예 : 12명 (4명)</td><td>18명
(기간제,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)</td></tr>
<tr><td rowspan="16">임 원
('16.05.10.
현원기준)</td><td>직 책
(직책명)</td><td>성 명
(익명처리)</td><td>주요경력
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</td><td>임 기
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</td></tr>
<tr><td>이 사 장</td><td>허○○</td><td>(전)○○광역시장</td><td>2014.03.28~2017.03.27</td></tr>
<tr><td>부이사장</td><td>송○○</td><td>○○광역시 ○구 구청장</td><td>2016.02.28~2017.02.27</td></tr>
<tr><td>원 장</td><td>허○○</td><td>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</td><td>2014.04.15.~2017.04.14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○○</td><td>○○부 지방세제정책관</td><td>당연직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○○</td><td>○○광역시 기획조정실장</td><td>2016.02.28~2017.02.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○○</td><td>○○광역시 재정기획관</td><td>2016.02.28~2017.02.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○○</td><td>○○도 자치행정국장</td><td>2016.02.28~2017.02.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신○○</td><td>○○도 행정국장</td><td>2016.02.28~2017.02.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신○○</td><td>○○광역시 ○○구 부구청장</td><td>2016.02.28~2017.02.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○○</td><td>○○도 ○○시 부시장</td><td>2016.02.28~2017.02.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오○○</td><td>○○도 ○○군 부군수</td><td>2016.02.28~2017.02.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박○○</td><td>○○대 교수</td><td>2015.02.28~2017.02.27</td></tr>
<tr><td>감 사</td><td>이○○</td><td>○○부 지방세정책과장</td><td>당연직</td></tr>
<tr><td>감 사</td><td>조○○</td><td>○○특별시 재무국장</td><td>2016.02.28~2018.02.27</td></tr>
<tr><td>주요기능</td><td colspan="4">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자본금[1]
(단위:백만원)</td><td colspan="2">1
(직전연도말 기준)</td><td>출자·출연액
(단위:백만원)</td><td>22,836
(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자·출연한 금액)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최근3년간
예산 현황
(단위:백만원)</td><td>연도</td><td>2014</td><td>2015</td><td>2016</td><td rowspan="3">재무현황
(백만원)
'15.12.31기준</td><td>자산</td><td>6,665
(자산 총액)</td></tr>
<tr><td>예산액[2]</td><td>8,315</td><td>7,518</td><td>8,406</td><td>부채</td><td>62
(부채 총액)</td></tr>
<tr><td>지자체
지원액[3]</td><td>7,712</td><td>7,198</td><td>8,276</td><td>자본[1]</td><td>6,603
(자본금 총액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경영성과
(단위:백만원)
'15.12.31기준</td><td colspan="3">총수익</td><td colspan="2">총비용</td><td>당기순이익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7,425</td><td colspan="2">5,990</td><td>1,435</td></tr>
</table>

[붙임 2]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

지방세기본법

[시행 2016.1.1] [법률 제13635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]

행정자치부(지방세정책과), 02-2100-3597

제146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0.12.27, 2013.1.1.>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<신설 2011.12.31>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16.3.22] [대통령령 제27038호, 2016.3.22., 타법개정]
행정자치부(지방세정책과), 02-2100-3597

제11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0.12.30, 2013.1.1.>

1.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
   가. 1만분의 1
   나.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2.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
   가. 1만분의 1.5
   나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.>

1.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에 대한 출연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3. 지방세 연구·홍보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.

<신설 2010.12.30, 2011.12.31, 2014.1.1.>

1.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
2.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에 해당하는 금액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(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)에 출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12.30.>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0.12.30.>

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. <개정 2010.12.30>

지방재정법

[시행 2016.1.1.] [법률 제13638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]
행정자치부(재정정책과), 02-2100-3506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<신설 2014.5.28.>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[전문개정 2011.8.4.]
[제목개정 2014.5.28.]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붙임 3]_기타 참고자료

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

한국지방세연구원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를 위한 관련자료 송부

1. 귀 시·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심의(안)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 자료(별첨자료포함). 끝.

한국지방세연구원장

수신자 서울특별시장(세제과장),부산광역시장(세정담당관),대구광역시장(세정담당관),인천광역시장(세정과장),광주광역시장(세정담당관),대전광역시장(세정과장),울산광역시장(세정담당관),세종특별자치시장(세정담당관),경기도지사(세정과장),강원도지사(세정과장),충청북도지사(세정과장),충청남도지사(세정과장),전라북도지사(세정과장),전라남도지사(세정담당관),경상북도지사(세정담당관),경상남도지사(세정과장),제주특별자치도지사(세정담당관),종로구청장(세무1과장),서울특별시중구청장(세무1과장),용산구청장(세무1과장),성동구청장(세무1과장),광진구청장(세무1과장),동대문구청장(세무1과장),중랑구청장(세무1과장),성북구청장(세무1과장),강북구청장(세무과장),도봉구청장(징수과장),노원구청장(재무과장),은평구청장(세무1과장),서대문구청장(세무1과장),마포구청장(세무1과장),기획재정국장(재무과장),강서구청장(재무과장),구로구청장(징수과장),금천구청장(세무1과장),영등포구청장(세무과장),동작구청장(세무1과장),관악구청장(세무1과장),서초구청장(세무1과장),강남구청장(세무1과장),송파구청장(세무1과장),강동구청장(세무1과장),부산광역시 중구청장(세무과장),부산광역시 서구청장(세무과장),부산광역시 동구청장(세무과장),영도구청장(세무과장),부산진구청장(시세과장),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(세무과장),부산광역시남구청장(세무1과장),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세무과장),해운대구청장(세무1과장),사하구청장(세무과장),금정구청장(세무과장),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(세무과장),연제구청장(세무과장),수영구청장(세무과장),사상구청장(세무과장),기장군수(세무과장),대구광역시 중구청장(세무과장),대구광역시 동구청장(세무과장),대구광역시 서구청장(세무과장),대구광역시남구청장(세무과장),대구광역시 북구청장(세무1과장),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(세무1과장),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세무과장),달성군수(세무과장),인천광역시 중구청장(세무과장),인천광역시 동구청장(세무과장),인천광역시 남구청장(세무1과장),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세무과장),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(세무1과장),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(세무1과장),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(세무1과장),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세무1과장),인천광역시 강화군수(재무과장),인천광역시 옹진군수(재무과장),광주광역시동구청장(세무과장),광주광역시서구청장(세무1과장),광주광역시남구청장(세무과장),광주광역시북구청장(세무1과장),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(세무1과장(수신불가)),대전광역시 동구청장(세무과장),대전광역시 중구청장(세무과장),대전광역시 서구청장(세무과장),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(세무과장),울산광역시중구청장(세무과장),울산광역시남구청장(세무1과장),울산광역시동구청장(세무과장),울산광역시북구청장(세무과장),울주군수(세무1과장),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세무팀장),수원시장(세정과장),성남시장(세정과장),고양시장(세정과장),부천시장(세정과장),용인시장(세정과장),안산시장(세정과장),안양시장(세정과장),남양주시장(세 정 과 장),의정부시장(세정과장),평택시장(세정과장),시흥시장(세정과장),화성시장(세정과장),광명시장(세정과장),파주시장(세정과장),군포시장(세정과장),광주시장(세정과장),김포시장(세정과),이천시장(세무과장),구리시장(세무과장),양주시장(세무과장),안성시장(세무과장),포천시장(세정과장),오산시장(세무과장),하남시장(세무과장),의왕시장(세무과장),여주시장(세무과장),동두천시장(세무과장),양평군수(세무과장),과천시장(세무과장),가평군수(세정과장),연천군수(세무회계과장),춘천시장(세정과장),원주시장(세무과장),강릉시장(세무과장),동해시장(세무과장),태백시장(세무과장),속초시장(세무과장),삼척시장(세무과장),홍천군수(재무과장),횡성군수(세무회계과장),영월군수(재무과장),평창군수(재무과장),정선군수(세무회계과장),철원군수(세무과장),화천군수(재무과장),양구군수(재정운영과장),인제군수(세무회계과장),고성군수(재무과장),양양군수(세무회계과장),청주시장(세정과장),충주시장(세정과장),제천시장(세정과장),보은군수(재무과장),옥천군수(재무과장),영동군수(재무과장),증평군수(재무과장),진천군수(세정과장),괴산군수(재무과장),음성군수(재무과장),단양군수(재무과장),천안시장(세정과장),공주시장(세무과장),보령시장(세무과장),아산시장(세무과장),서산시장(세무과장),논산시장(세무과장),계룡시장(세무회계과장),당진시장(세무과장),금산군수(재무과장),부여군수(재무과장),서천군수(재무과장),청양군수(재무과장),홍성군수(재무과장),예산군수(재무과장),태안군수(재무과장),전주시장(재무과장),군산시장(세무과장),익산시장(세무과장),정읍시장(세정과장),남원시장(재정과장),김제시장(세정과장),완주군수(재정관리과장),진안군수(기획재정실장),무주군수(재무과장),장수군수(재무과장),임실군수(재무과장),순창군수(재무과장),고창군수(재무과장),부안군수(재무과장),목포시장(세정과장),여수시장(세무과장),순천시장(세무과장),나주시장(세무과장),광양시장(세정과장),담양군수(세무회계과장),곡성군수(재무과장),구례군수(재무과장),고흥군수(재무과장),보성군수(재무과장),화순군수(재무과장),장흥군수(재무과장),강진군수(세무회계과장),해남군수(세무회계과장),영암군수(재무과장),무안군수(재무과장),함평군수(재무과장),영광군수(세무회계과장),장성군수(재무과장),완도군수(재무과장),진도군수(세무회계과장),신안군수(세무회계과장),포항시장(세정과장),경주시장(세정과장),김천시장(세정과장),안동시장(세정과장),안정행정국장(세무과장),영주시장(세무과장),영천시장(세정과장),상주시장(세정과장),문경시장(세무과장),경산시장(세무과장),군위군수(재무과장),의성군수(재무과장),청송군수(재무과장),영양군수(재무과장),영덕군수(재무과장),청도군수(재무과장),고령군수(재무과장),성주군수(재무과장),칠곡군수(세무과장),예천군수(재무과장),봉화군수(재정과장),울진군수(재무과장),울릉군수(재무과장),창원시장(세정과장),진주시장(세무과장),통영시장(세무과장),사천시장(세무과장),김해시장(회계과장),밀양시장(세무과장),거제시장(세무과장),양산시장(세무과장),의령군수(재무과장),함안군수(재무과장),창녕군수(재무과장),고성군수(재무과장),남해군수(재무과장),하동군수(재무과장),산청군수(재무과장),함양군수(재무과장),거창군수(재무과장),합천군수(재무과장)

대리 행정지원부장 경영지원본부장 2016. 5. 17.

협조자

시행 경영지원본부-840 (2016. 5. 17.) 접수 재무과-10589 (2016. 5. 17.)

우 150-8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-0 한국지방세연구원 / http://www.kilf.re.kr

전화번호 02-2071-2723 팩스번호 02-2071-2722 / s1h11@kilf.re.kr / 대국민 공개

경 상 남 도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

1.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-3069호(2016. 8. 25.)와 관련됩니다.

2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「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」을 통보하오니,

3. 각 시·군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, 통보, 정산 등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, 아울러 붙임 출연금 산정서식에 따라 **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하여 '16. 9. 6.(화)까지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1부.
2.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서식 1부. 끝.

경 상 남 도 지 사

수신자 전 시군 세무부서장

주무관	세정담당	세정과장	전결 2016. 8. 26.
협조자			

시행 세정과-9868 (2016. 8. 26.) 접수 재무과-19989 (2016. 8. 26.)

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경남도청 (사림동) / http://gyeongnam.go.kr

전화번호 055-211-3717 팩스번호 055-211-3719 / dakaski@korea.kr / 비공개(5)

정부3.0 경남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.